

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19.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19. 10. 7.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19. 10. 7.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주민 참여 제한 소지가 있는 내용과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신청 지역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개모집한 날 현재의 자격으로 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이수를 위원 선정(위촉)시의 자격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 나. 결원으로 위촉한 위원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명시(안 제8조)
- 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명시(부칙)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 나.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에 반영

다. 합 의

- 1) 기획감사담당관(법무개혁담당): 규제심사
- 2) 복지지원과(여성가족담당): 성별영향분석 평가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19-1181호
 - 가) 예고기간: 2019. 9. 3. ~ 2019. 9. 23.(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 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가운데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례 제2469호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은 고성읍, 상리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에 적용한다.

조례 제2469호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4조(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특
례) 기존 「고성군 주민자치센
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인 사람은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제7조에 따른 위원 위촉으로 본
다.

조례 제2469호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삭 제>

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간사 활동비 발생
⇒ 8,590원×80시간×12월×5개 읍면=41,232,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작성자: 행정과장 이 을 상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